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명시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헌법소원 각하 판결

간협,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비대위 구성 등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0월 27일 나왔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10월 27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이하 '헌법소원')에 대해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 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은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올해 3월 28일 제출됐으며, 청구인은 전문대학 학교법인과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

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6월 23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헌법소원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왔다. 비상대책위 위원은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및 시도간호사회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2015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을 발의한 신경림 전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법무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했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과 합헌을 지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 대표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함으로써 헌법소원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학교법인인 심판대상조항(의료법 제80조제1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청구인 고등학생의 경우 아직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 여부를 다룰 자기관련성을 갖었다고 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에 위한 것이며,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의료법 개정과 이번 헌법소원이 마무리되기까지 항상 함께해주고 지지해준 36만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간호중심형 노인요양시설 개발해야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 국회 토론회

주최 윤종필 국회의원

주관 간협, 노인간호사회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중심형 시설'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인력 배치에 따른 간호등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토론회가 마련됐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와 노인간호사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 8년이 지났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13만명에 이르고, 시설 수도 5천개를 넘어섰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고, 간호인력 미충원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된 시설에서 입소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확충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확충돼야 한다"면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금재 노인간호사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부담 감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확대돼야 하며, 노인전문간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의 질은 제공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고, 전문인력 확보는 수가와 연계되는 문제"라면서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오세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근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길부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인 간호사 확충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개

선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한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문화된 간호인력 확대와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증가할수록 욕망 발생 및 악화 비율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 감소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동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기준 개선, 간호가능 강화, 지불보상 및 수가체계 개선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8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을 개선해 최소한 입소자 20명 당 간호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되, 2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1명 이상을 간호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 규모를 갖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문화 및 특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간호사를 중점 인력으로 활용하는 간호중심형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규숙·김숙현 기자

(3면에 계속)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이하 '헌법소원')에 대하여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 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은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대한간호협회가 이번 헌법소원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이다. 협회는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2016년 6월 23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의료법 제80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비상대책위 위원은 중앙회 임원, 지부 회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개정 의료법을 발의한 신경림 전 국회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여 헌법소원 대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협회는 법무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과 합헌을 지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조무사학원 대표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함으로써

써 헌법소원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학교법인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받은 자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인 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여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습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다룰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하였다.

비록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며,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에 위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간호와 관련된 전면적 체계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그동안 입법적 흥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가 정립되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고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처럼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 규정으로 인하여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하여 의료법 규정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받게 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의료법 개정과 이번 헌법소원이 마무리되기까지 항상 함께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36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2016. 10. 27.

대한간호협회